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640호
----------	-------

2017. 07. 14.(금)
정 책 복 지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06월 26일
- 회부일자 : 2017년 06월 28일

다. 상정일자 : 2017년 07월 11일

-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서승우 기획관리실장)

가. 제안이유

- 도정 각 분야에서 자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도정 정책자문단을 행정수요에 맞추어 운영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자문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분과위원회 명칭 개정 (안 제6조제1항제4호)
 - 창조경제분과위원회 → 경제분과위원회
-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 (안 제11조)
 - 2018년 12월 31일 → 2021년 12월 31일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한철우)

- 도정 정책자문단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에 따라 민간 전문가의 전문지식 및 경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요 정책의 입안·추진 등에 있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민·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2월 조례제정을 통해 설치된 자문기관임.
- 또한,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총 7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, 100명의 위원들이 각 분과에서 활동함.

※ 분과위원회 구성현황 : 7개 분과 100명 / (3기)2015.7.6~2017.7.5.(2년)

계	공공혁신	복지·여성	문화·관광	창조경제	바이오·환경	농·어업	지역균형발전
100	12	18	12	20	12	12	14

-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보면,
 - 안 제6조는, 자문단 내 분과위원회 중 ‘창조경제분과위원회’의 명칭을 ‘경제분과위원회’로 변경한 것으로,
 - 자문기관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해서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바, 분과위원회 명칭 개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, 지역별 특화된 창조경제의 범위를 넘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경제 영역의 흐름 전반을 수용하기 위한 측면에서 명칭을 보편적 용어인 ‘경제분과위원회’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됨.
 - 안 제11조는, 조례의 유효기간을 기존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한 것으로,
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의3에 따라,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, 본 조례안에서의 유효기간 연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.
 - 도정정책자문단은 제3기의 활동현황을 볼 때, 임기 2년 동안 30여건의 도정개선 연구과제발표 및 도의 주요업무계획 자문 등을 통해 왕성한 활동을 보인 바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,
 - 또한, 제3기 자문단의 임기가 2017년 7월5일 종료 후 새롭게 구성될 제4기 자문단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2년의 임기를 부여할 수 없게 됨. 따라서, 제4기 자문단의 2년 임기 보장 측면에서도 유효기간의 연장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[참고자료]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현황

□ 도정 정책자문단 개요

- 운영 근거 :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
- 운영 목적 : 도정 주요정책 전문가 자문 및 입안추진 등 민관협력 강화
- 주요기능 : 자문·협의
 - 장기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및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
 - 새로운 정책, 행정개선 및 현안사항에 대한 대처·해결방안에 관한 사항
 -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자문단 임기 : 2년(연임가능)
- 추진현황
 -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제정 : 2011. 2. 11.
 - 제1기(5개 분과 70명, '11. 3.29.) / 제2기(5개 분과 70명, '13. 5.30)
 - 제3기(7개 분과 100명, '15. 7. 6.~ '17. 7. 5.)

□ 제3기 도정 정책자문단 구성현황

- 인 원 : 7개 분과 100명

구분	계	공공혁신	복지.여성	문화.관광	창조경제	바이오.환경	농.어업	지역균형발전
위원 수	100	12	18	12	20	12	12	14
(여성)	(33)	(2)	(13)	(5)	(4)	(2)	(3)	(4)

- 임 기 : 2015. 7. 6. ~ 2017. 7. 5. (2년)

○ 주요 자문내용

- 주요 업무계획 수립 시 신규사업 자문 ('16. '17.)
-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, 대선공약 건의과제 발굴, 경제위기 상황 등 자문
- 도정 개선 연구과제 발표 : 30건('15년 16건, '16년 14건 : 워크숍 개최 시)
- 도정 주요현장 방문(2회), 각종 위원회 참여 및 자치연수원 등 강의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 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도정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640

제출연월일 : 2017년 6월 26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도정 각 분야에서 자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도정 정책자문단을 행정수요에 맞추어 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자문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분과위원회 명칭 개정
(안 제6조제1항제4호)
 - 창조경제분과위원회 → 경제분과위원회
-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 : 2018년 12월 31일 → 2021년 12월 31일
(안 제11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경제분과위원회

제11조 중 “2018년 12월 31일”를 “202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분과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자문 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 회를 설치한다. 1. ~ 3 (생 략) 4. <u>창조경제분과위원회</u>	제6조(분과위원회의 설치 등) ① 1. ~ 3 (현행과 같음) 4. <u>경제분과위원회</u>
제11조(유효기간) 이 조례의 <u>유효기간</u> <u>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</u> 하되, 필요시 연장 할 수 있다.	제11조(유효기간) 이 조례의 <u>유효기간은</u> <u>2021년 12월 31일까지로</u> 하되,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(이하 "자문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 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0조의2(자문기관의 구성)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0조의3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 정책의 입안·추진 등에 있어 민·관 협력 강화를 위하여 도정 정책자문단 구성·운영

2. 비용 발생 요인

-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수당 및 워크숍 비용 등

3. 관련조문

- 제9조(수당)
 -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- 제8조에 따라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재정수반요인 : 정책자문단 운영수당 및 워크숍 개최비용 등
나. 추계의 전제 : 7개 분과 100명,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 개최 등
다. 추 계 결 과 : '17년부터 향후 4년간 총 200,000천원정도 소요
라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천 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17)	2차년도 (2018년)	3차년도 (2019년)	4차년도 (2020년)
세 출	20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
도정 정책자문단 운영수당및워크숍비용	20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

※ 연간 소요비용 : 50,000천원정도 (운영수당 30,000천원, 행사운영비 20,000천원)

6. 작성자 :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이두표